##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

-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 · 안전투자 -

2019. 1. 23

금융위원회 산업은행 · 기업은행

# 목 차

I . 추진배경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
Ⅱ.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2	2
1. 프로그램 운영개요 2	2
2. 주요 지원분야 4	4
3. 비금융 지원방안 (	6
Ⅲ. 환경·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7	7
1. 프로그램 운영개요 7	7
2. 주요 지원분야 {	8
3. 기타 지원조건 1(	0
IV. 적극적 자금지원체계 마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(	0

## Ⅰ. 추진배경

- □ 조선·자동차 등 **주력산업 부진**, **대외 불확실성 확대** 등의 영향 으로 기업투자심리 위축 및 기업투자 **둔화세** 지속
  - \*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: ('17.4/4)95, ('18.1/4)96, (2/4)95 (4/4)93 ('19.1월)93 설비투자 추이(전기비, %) : ('17)14.1, ('18.1/4)8.4, (2/4)△11.0, (3/4)△6.2
  - 또한 미세먼지, 안전사고 등 환경·안전분야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중소·중견기업은 관련분야 투자여력 부족
- □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, 신산업 확산, 환경·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
- □ 정부는 「'19년 경제정책방향」을 통해 **기업투자 촉진**을 위한 16조원\* 규모의 「금융지원 프로그램」 운영계획을 발표
  - \* 「산업구조 고도화 지원」(10조원), 「환경·안전투자 지원」(5조원), 「ICT 펀드」 (1.2조원, ICT 관련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, 과기부·우정사업본부)
  - (산업구조 고도화: 10조원) 스마트화·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· 중견기업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생태계 역동성 제고 지원
  - (환경·안전투자: 5조원)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중소·중견기업의 환경·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위

#### ※「'19년 경제정책방향」중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

-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(6조원+α)
- ② 민간투자사업 대상확대 등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(6.4조원+α)
- ❸ 16조원 규모의 「금융지원 프로그램」을 신속 가동
- □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·안전분야 투자 지원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세부 운영방안 마련 필요
  - **주요 지원분야 및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**, 자금공급과 연계한 비금융 서비스 등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행 추진
  - ※ ICT 펀드(1.2조원)는 운용사 선정절차 진행 중(1.7일 출자공고, 우본)

## Ⅱ.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

#### 1. 프로그램 운영개요

- □ 프로그램 규모 및 지원대상 : 3년간 10조원
  - (산은) 예비중견·중견기업 중심 3년간 7조원
  - (기은) 중소기업 중심 3년간 3조원(지방소재 중소기업 40%이상 지원)

<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(조원) >

구 분	′19	′20	′21	계
산 은	3.0	2.0	2.0	7.0
기 은	1.0	1.0	1.0	3.0
계	4.0	3.0	3.0	10.0

- ※ 실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기업 자금수요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
- 2 지원분야 : 전통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
  - (중소·중견기업 투자)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·기술투자
  - ② (대중소 상생투자)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
  - 3 (사업재편) 사업전환,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
    - ▶ 주력산업
    - [ '19년 집중지원 대상 4대 주력산업 ] (「2019년 경제정책방향」)
      - : 자동차, 조선, 디스플레이, 석유화학
    - [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] (「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」)
      - : 소재·부품·장비 / 반도체·디스플레이·배터리 / 자동차·조선 / 섬유·가전
    - ▶ 신성장 분야
    - [3대 전략투자](기재부,「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」)
      - : 데이터·블록체인·공유경제, 인공지능(AI), 수소경제
    - **[ 8대 핵심선도산업 ]** (「2018년 경제정책방향」)
      - : 미래자동차, 드론, 바이오헬스, 스마트시티, 스마트팜, 스마트공장, 에너지신산업, 핀테크
    - 「혁신성장 공동기준」 품목(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정) 등 신성장 분야

#### ③ 지원방식 및 자금용도

- (지원방식) [산은] 대출 및 투자(주식·사모사채·주식관련채권 등) [기은] 대출
- (자금융도) ① 시설자금 및 시설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\*
   ② R&D, M&A·분사, 영업양수도 등 소요자금
  - \*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을 통해 확보한 시설의 초기운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수요에 대해 시설투자 자금의 20% 이내에서 지원

#### 4 기타 지원조건

○ (기업당 지원한도)

[산은] (시설자금) 최대 2,500억원, (운영자금) 최대 300억원 [기은] (시설자금) 최대 250억원, (운영자금) 최대 30억원

- (여신비율) 총소요자금(사업비)의 80% 이내에서 지원하되, 중소 기업의 경우 최대 100%까지 지원\*
  - \*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자금 조달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안
- (여신기간) [산은] (시설자금) 10년 이내, (운영자금) 3년 이내[기은] (시설자금) 15년 이내, (운영자금) 5년 이내
- (금리우대) 0.5 ~ 0.7%p 감면
- (중복지원 배제) 동일기업의 산은·기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자금의 중복이용 배제

#### 2. 주요 지원분야

#### [1] 중소·중견기업 투자

- □ **중소·중견기업**의 주력산업 분야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창출· 확산 등에 필요한 설비·기술투자
- ① (생산 효율화) 스마트공장 신증축 등 스마트화\* 확산·고도화, 생산설비 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설비투자
  - \* [스마트공장 수준] (기초)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(중간1) 실시간 생산정보 수집·분석 (중간2)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(고도화) 맞춤형 유연생산 및 지능형 공장
- ② (기술개발·도입) 핵심기술 국산화, 신기술 연구개발, 기술사업화 등 자체 연구개발(R&D) 투자 및 외부기술 획득(Buy R&D)
  - 수요창출,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**빅데이터, AI 관련 시스템·** 플랫폼 조성 관련 연구개발도 지원
  - ▶ (예시) 물류회사 고객의 물류서비스 이용패턴, 최적 배송경로 탐색 등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투자
- ③ (인프라)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신산업 창출·확산에 필요한 인프라 및 과련설비 생산시설 구축
  - ▶ (예시) 태양광 설비 공급업자의 패널 생산공장 신축,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수소연료·충전소 관련설비 생산시설

#### (2) 대중소 상생투자

- □ **대중소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**을 위한 협력업체 설비투자·기술 개발 및 밸류체인 단위투자
- ① (협력업체 투자) 대기업-협력업체간 납품계약 이행 및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비 신증축 및 개보수 투자, 기술개발 등
  - ▶ (예시) 대기업 핵심기술과제를 수행하는 우수기술 보유업체의 기술개발 지원

- ② (밸류체인 단위 투자) 특화산단 참여 협력업체, 대기업 해외 진출시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 등의 설비투자
  - ▶ (예시) 대기업의 대규모 식품생산 클러스터 조성시 동반입주하는 중소·중견 기업의 공장신축 및 설비구입
  - ▶ (예시) 대기업의 해외 스마트폰 조립공장 신축시, 스마트폰용 광학필터를 코팅하여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현지 동반진출하여 공장 설립

#### (3) 사업재편

- □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전환 등 **사업구조 개선** 및 과잉 공급 해소 등을 위한 **신시장 진출·사업장 이전** 
  - ① (사업구조 개편) 미래 성장동력 관련부문 분할·신설 등 성장역량 집중을 위한 자발적·선제적 사업구조 개편
    - ▶ (예시) LCD 부품 제조업체의 2차전지 사업부 신설을 통한 사업영역 전환
  - ② (사업전환 및 확장)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·품목 전환 및 기존 사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조·서비스간 융복합
    - ▶ (예시) 인터넷 포털·메신저 회사의 내비게이션 회사인수를 통한 사업영역 확장
  - ③ (해외진출) 신남방·신북방 등 新시장 발굴 등을 위한 해외진출
    - ▶ (예시) 유럽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동유럽 이차전지 공장 신증축
  - ④ (사업장 이전 및 재배치) 지방이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(유턴기업) 지원
    - ▶ (예시) 중국 인건비 상승에 따라 현지 신발생산 공장을 철수한 아웃도어 업체가 로봇생산라인 도입 등 스마트화를 통해 국내 복귀
  - ※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산업 트렌드에 따른 기업 투자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원분야를 탄력적으로 조정

#### 3. 비금융 지원방안

- □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장기경영전략, 시장접근, 외부 네트워크 등이 **상대적으로 취약**한 점을 감안하여 **비금융 지원 병행** 
  - 1 (컨설팅) R&D, 사업재편 등 중소·중견기업의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 산은·기은\*에서 자문 및 연계서비스 제공
    - \* [산은] M&A 컨설팅실 [기은] 기업지원 컨설팅부
    - (R&D) 기술사업화,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및 기술이전·외부기술 도입시 기술거래 지원\*
      - \*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 등을 통한 매도 매수 중개
      - ▶ (사례) 중소기업에서 산업은행의 가치평가 및 중개를 통해 대학기술지주 회사가 보유 중인 환기장치용 전열교환 관련 특허권을 매입
    - (사업재편) 사업재편 과정 전반에 걸쳐 인수효과 분석, 실행 전략 수립, 법률·재무·세무 등의 자문 및 전략실행 지원\*
      - \* 사업진단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딜구조 수립, 매수 매도기업 탐색 등
  - ② (네트워크) 중소·중견기업에 산은·기은이 보유 중인 외부 전문 기과·투자자 네트워크를 제공
    - (산학연) 연구기관·대학기술지주사 등과 연계하여 기술정보 제공 및 기업의 기술이전·거래, 기술사업화 등 지원
    - (벤처투자)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이용기업에 투자 IR 플랫폼\*을 통한 투자유치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제공
      - \* [산은 넥스트라운드] 액셀러레이터·VC·PE 등을 대상으로 스타트업·벤처기업 IR 개최 → 투자자와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및 투자연결 지원

## Ⅲ. 환경·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

#### 1. 프로그램 운영 개요

- Ⅱ 프로그램 규모: 3년간 5조원
  - 향후 3년간 산은·기은 각각 2.5조원 지원하여 총 5조원 공급
  - '19년은 산은·기은 각각 1조원 지원하여 총 2조원 공급

< 연간 프로그램 은	은영계획(조원) >
-------------	------------

구 분	′19	′20	′21	계
산 은	1.0	0.75	0.75	2.50
기 은	1.0	0.75	0.75	2.50
계	2.0	1.5	1.5	5.00

#### 2 지원 분야

- ① (환경·안전설비) 안전시설·장비, 내진·내화, 집진·흡착 등 환경· 안전 분야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
- ② (노후설비·건축물) 노후화된 기계·기구 교체, 사업장·공장 개선 관련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
- ③ (생활SOC 투자) 문화·체육, 관광, 노후산단,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선 및 신규투자를 통한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

### ③ 지원방식 / 대출조건

- **(지원방식 / 자금용도)** 대출 / 시설(설비)자금
- (기업당 대출한도) [산은] 최대 300억원 [기은] 최대 200억원
- (**금리우대**) 1.0%p 감면
- (대출기간) [산은] 10년 이내 [기은] 15년 이내

#### 2. 주요 지원분야

#### [1] 환경·안전분야 설비투자

- ① (환경분야) 대기오염방지<sup>①</sup>, 온실가스 감축<sup>②</sup>, 유해화학물질 저감<sup>③</sup> 등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
  - ①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시설
  - ② 「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인증기술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에 따른 환경 신기술, 그 밖에 배출권거래제외 승인 기술 등
  - ③ 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시설 등
- ② (안전분야) 각종 법규 등에서 인정하는 안전설비<sup>①</sup>, 안전진단 등 지적사항 대응을 위한 투자<sup>②</sup>, 해외인증 등에 필요한 장비 도입<sup>③</sup> 등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
  - ① 조특법, 소방시설법, 위험물안전관리법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운영규정 등에 규정된 시설·장비에 대한 투자
  - ② (예시) 산업부의 노후산단 정밀안전진단, 환경부의 사업장 안전검사, 민관합동 국가안전대진단 등에 따른 개선·지적사항 이행과 관련한 시설투자
  - ③ (예시) 항공관련 국제인증(Nadcap) 충족을 위한 장비, 시설
- ③ (안전·방재업종 영위기업의 설비투자) 안전산업 분류체계 및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등에 포함된 업종의 설비투자
  - ※ (예시) 소방시설공사업, 석유제품제조·판매업, 가스제조·공급업 등

### [2] 노후 설비·건축물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

- 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 기계·기구의 교체
  - (대상) 잔여 내용연수\*가 최초 내용연수의 1/2미만인 기계·기구
    - \*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내용연수: 의약품 제조업(5년) 전자부품 제조업(6년), 화학물질 제조업(8년), 금속제조업(10년) 등

- [2] 법령상 인정되는 노후 시설·건축물의 개·보수, 신·개축
  - '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'에 따른 "노후·불량 건축물<sup>①</sup>", '건축법 시행령'에 따른 "소규모 노후건축물<sup>②</sup>" 등의 신·개축, 개·보수 등
    - ① (예시) 준공 후 20년~30년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
    - ② (예시)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(단, 집합건물, 공동주택 등 제외)

#### [3] 민간의 생활 SOC 관련 설비투자

- ※「생활 SOC 10대 과제(기재부)」중 민간자금수요가 있는 6개 과제를 선정
- ① (노후산단) 노후거점산단<sup>①</sup>, 청년친화산단<sup>②</sup> 내 공장 신축, 증· 개축 및 시설 현대화
  - ① 「산업입지 및 개발법」에서 정한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
  - ② 산업부의 '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'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: '18년 6개 선도단지 지정 완료 → '22년까지 점진적 확대 추진
- ② (미세먼지 대응) 미세먼지 저감용품(공기청정기, 필터) 제조업 등의 신규시설투자
- ③ (신재생에너지) 신재생에너지\*설비 설치 및 보급지원
  - \* (예시)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, 수소에너지 충전시설 설치·보급 등
- ④ (스마트영농) 스마트 영농사업에 대한 시설투자\* 및 스마트 영농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한 시설투자
  - ※ 스마트 영농 : 스마트팜, 스마트축산, 스마트양식 등
    시설투자의 범위 : 기존 영농사업자의 스마트 영농으로의 사업전환도 포함
- 5 (문화·체육) 민간체육시설<sup>①</sup>, 다목적 체육관<sup>②</sup> 지원
  - ① 실내외 수영장, 볼링장, 클라이밍장 등 국민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
  - ② 헬스, 배드민턴, 요가, 댄스스포츠 등을 독립된 강습으로 제공하는 종합 체육시설
- ⑥ (지역관광) 박물관, 미술관 등 문화전시시설, 캠핑·야영장 등 휴양시설, 카트·승마장, 주말농장, 테마파크 등 놀이·문화시설

#### 3. 기타 지원조건

- ① (중복지원 제외) 동일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설비투자펀드 (1차, 2차, 지역, 안전·환경설비투자펀드)와 중복지원 불가
  - ※ 단, 해당 기업이 별도 신규계획사업에 따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지원 가능
- ② (지원목적외 자금사용불가) 환경·안전업종 관련기업이 사업용도 이외의 용도(임대, 투자 등)로 자금사용 불가
- ③ (내진·내화시설 우선지원) 내진·내화설비를 생산하거나 내진· 내화 설비 신규투자기업에 우선하여 지원

## Ⅳ. 적극적 자금지원체계 마련

-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· 업종별 여신한도\* 적용대상에서 제외
  - \* 매년 업황주기에 따른 산업위험 등을 반영, 산업별·업종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·관리
  - ▶ (예시) 자동차산업 내 전장부품업체가 수소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 신규 진출을 위해 자금이용시 해당 금액은 자동차부품업 여신한도관리에서 제외
- ② 자금집행(산업구조 고도화, 환경·안전투자) 관련 산은·기은 임직원의 고의·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추진
- ③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**산은·기은의 자본적정성**, **손실률** 등을 감안하여 **자본확충 방안** 강구
- ④ 「기업투자 활성화 지원단<sup>\*</sup>」을 구성,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**주기적** 으로 점검(분기 1회)하고, 기업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·반영
  - \* 금융위, 산은, 기은 실무자로 구성,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